



목차

1. 사업개요
2. 프로세스
3. 지원대상
4. 지원 규모 및 내용
5. 기업 규모 및 대상업종
6. 우대기업 구분
7. 신청절차
8. 제출서류 목록
9. 제출서류 상세내용
10. 제외기업
11. 유의사항

「2018년 청년고용우수기업 근로환경개선사업」

○ 사업개요

구분	내 용
사업비	970백만원
지원대상	청년 신규채용 2명이상 포함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인천소재 중소기업
지원규모	30개사 내외(* 청년 채용인원 기준에 따른 차등 지원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2인이상 ~ 3인이하 : 10백만원 이내 지원 • 5인이하 : 20백만원 이내 지원 • 10인이하 : 30백만원 이내 지원 • 10인초과 : 40백만원 이내 지원
지원내용	기업 근로환경개선 시설 개보수 비용 및 물품구입비용 지원
모집기간	수시모집 (공고일~ 예산 소진시까지)

○ 프로세스

모집 · 평가	1. 사업공고 (IBITP)	- 사업공고
	2. 참여신청서 제출 (신청기업)	- 사업신청서 및 관련서류 일체 제출 bizok.incheon.go.kr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접수
	3. 평가 및 지원결정 (IBITP → 신청기업)	- 서류심사 (50%), 현장평가 (20%), 위원평가 (30%)
사업 수행	4. 선정공고 (IBITP)	- 선정기업은 결과 통보 후 사업계획서 및 결정사항에 의한 과제수행
지원금 지급	5. 비용완납 (선정기업)	- 총 소요금액 <기업이 우선 완납> 계좌입금 규정준수 (현금 지출 불가)
	6. 지급신청서 제출 (선정기업)	- 지원금 신청서(지출증빙 포함) 등 관련서류 제출 - 현장확인 (IBITP)
	7. 지원금 지급 (IBITP → 신청기업)	- 검토 후 지원금 지급(기업체 계좌로 지급)

○ 지원대상 : 청년 신규채용(정규직) 인원이 2명 이상인 기업

구분	내 용
신 규 채 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인천 거주 청년을 2명이상 채용한 실적이 있는 기업 • 인정범위(예시) : 신청일(2018.6.3.), 실적인정(2017.6.3.~2018.6.3.) • 청년 채용은 신청일 현재까지 재직 중에 있는 자이며, 주 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인 상시근로자를 말함 • 중소기업의 경우 2명 이상, 중견기업의 경우 10명 초과 청년신규채용 • 4대 사회보험 가입자로 만 15세~39세 채용 실적 인정. * 만15세~만39세 (2002.01.01. ~ 1979.12.31. 범위에 출생한 자로 한정) • 신청일 현재 재직중이어야 함. ※ 신청기업 대표 및 임원과 직·간접적으로 연계되어있는 친인척 관계 (직계존비속, 형제, 자매 등)에 해당하는 청년은 채용실적에서 제외 • 임차건물의 경우 참여 기업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건물주가 직접 신청 가능.
소 재 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기업) 주 사업장의 소재지가 인천인 기업 (신청일 현재) - (청년)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가 인천인 청년(채용일 기준) • 채용시점 인천광역시 주민등록 여부 확인 • 과거 주소지 변동사항 포함된 주민등록등본 확인 • 청년 채용 당시 주민등록 상 거주지는 관외였으나, 인천으로 전입 신고 후 기업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인천에 거주 했을 경우 인정. • 청년의 주소지는, 신청일 1개월 이내 발급된 과거 주소지 변동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등본으로 인정 •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이 어려울 경우, 주민등록초본으로 추가 제출 확인 할 수 있음. • 신청기업 대표 및 임원과 직·간접적으로 연계되어있는 친인척 관계 (직계존비속, 형제, 자매 등)에 해당하는 청년은 채용실적에서 제외
기업 규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기업 (1년간 평균) - 중견기업의 경우 청년 10명 초과 채용시 지원 가능

○ 지원 규모 및 내용 : 청년 채용인원 기준에 따라 차등지원

구분	내 용							
지 원 규 모	- 청년 신규채용 인원기준							
	청년신규채용인원	지원금액						
	2인이상 ~ 3인이하	10백만원 이내 지원						
	5인이하	20백만원 이내 지원						
	10인이하	30백만원 이내 지원						
	10인초과	40백만원 이내 지원						
지 원 내 용	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 <th>내용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시설 개보수 지원</td> <td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휴게실, 기숙사, 샤워실, 화장실, 탈의실, 구내식당 등 직원 편의시설 • 신축 및 매입은 지원 불가, 증·개축은 지원 가능 </td> </tr> <tr> <td>물품 구입 지원</td> <td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에어컨, 작업용 의자, 사물함, 공기청정기, 커피머신, 기숙사 가구 등 • 신품만 지원가능, 최대 지원금의 50%를 초과할 수 없음 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	구분	내용	시설 개보수 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휴게실, 기숙사, 샤워실, 화장실, 탈의실, 구내식당 등 직원 편의시설 • 신축 및 매입은 지원 불가, 증·개축은 지원 가능 	물품 구입 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에어컨, 작업용 의자, 사물함, 공기청정기, 커피머신, 기숙사 가구 등 • 신품만 지원가능, 최대 지원금의 50%를 초과할 수 없음
	구분	내용						
시설 개보수 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휴게실, 기숙사, 샤워실, 화장실, 탈의실, 구내식당 등 직원 편의시설 • 신축 및 매입은 지원 불가, 증·개축은 지원 가능 							
물품 구입 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에어컨, 작업용 의자, 사물함, 공기청정기, 커피머신, 기숙사 가구 등 • 신품만 지원가능, 최대 지원금의 50%를 초과할 수 없음 							
	<p>- 전액지원(* 부가가치세 제외금액 기준이며, 지원금 외 추가비용은 기업체 부담)</p>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세부사항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시설설치 및 물품 구입 지원은 신품만 지원하며 총 지원금의 50%를 초과할 수 없음. • 시설 개보수와 시설설치 및 물품구입지원이 병행하여 진행 될 경우 총 지원금에서 물품구입비용은 50%를 초과 할 수 없음. • 시설 개보수 지원 시 신축은 불가하며 인테리어 및 증·개축은 지원 가능함. • 부지 및 건물 매입비, 기존 시설 매입비, 임차료, 이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. 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	세부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시설설치 및 물품 구입 지원은 신품만 지원하며 총 지원금의 50%를 초과할 수 없음. • 시설 개보수와 시설설치 및 물품구입지원이 병행하여 진행 될 경우 총 지원금에서 물품구입비용은 50%를 초과 할 수 없음. • 시설 개보수 지원 시 신축은 불가하며 인테리어 및 증·개축은 지원 가능함. • 부지 및 건물 매입비, 기존 시설 매입비, 임차료, 이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. 				
세부사항							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시설설치 및 물품 구입 지원은 신품만 지원하며 총 지원금의 50%를 초과할 수 없음. • 시설 개보수와 시설설치 및 물품구입지원이 병행하여 진행 될 경우 총 지원금에서 물품구입비용은 50%를 초과 할 수 없음. • 시설 개보수 지원 시 신축은 불가하며 인테리어 및 증·개축은 지원 가능함. • 부지 및 건물 매입비, 기존 시설 매입비, 임차료, 이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. 								

○ 기업 규모 및 대상업종 : 제조업, 제조관련 서비스업

구분	내용						
제 조 업	<공장등록기업>						
	<p>공장등록증명원 제출</p> <p><공장 미등록 제조기업></p> <p>제조시설 면적이 500m² 미만인 경우 건축물관리대장으로 증빙 가능.</p> <p>* 단, 건축물관리대장에 표기된 용도가 제조용도 이어야 함</p>						
제 조 관 련 서 비 스 업	<업종증빙자료 (표준산업분류 분류번호) 참고>						
	해당 등록증 또는 허가증 제출						
		업종명	분류번호	업종명	분류번호	업종명	분류번호
		도로화물 운송업	493	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	62021	경제학 연구개발업	70201
		해상운송업	501	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	58211	기타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	70209
		화물 취급업	5294	모바일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	58212	토양 및 지하수 정화업	39001
		창고업	5210	기타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	58219	기타 환경 정화 및 복원업	39009
		물류터미널 운영업	52913	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	58221	환경관련엔지니어링 서비스업	72122
		화물운송 중개, 대리 및 관련서비스업	52992	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	58222	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	72129
		화물포장, 검수 및 하역 서비스업	52993	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	62010	제품 디자인업	73202
		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(오락기 및 도박기계 임대업은 제외)	76390	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(다만 제조업 지원목적만 해당)	63120	시각 디자인업	73203
		산업설비, 운송장비 및 공공장소 청소업	74212	데이터베이스및온라인 정보 제공(다만제조업 지원목적만 해당)	63991	기타 전문 디자인업	73209
		폐기물 수집·운반업	381	물리, 화학 및 생물학 연구개발업	70111	물질성분 검사 및 분석업	72911
		(기타 환경 정화 및 복원업 포함)	-39009	농학 연구개발업	70112	기타 기술 시험, 검사 및 분석업	72919
		폐기물 처리업	382	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	70113	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	59111
	폐수 처리업	37012	전기·전자공학 연구개발업	70121	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	59112	
	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	74100	기타 공학 연구개발업	70129	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	59113	
	전시 및 행사대행업	75992	기타 자연과학 연구개발업	70119	방송프로그램 제작업	59114	
	포장 및 충전업	75994					
기 타	<임대건물> 지원가능 (임대차계약서, 사업추진 동의서 제출)						
	<공동임주건물의 공동시설> 공동발의 가능 (공동발의 동의서 제출)						

○ 우대기업 구분

참여기업 가점사항	
인천광역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	청년친화기업 ,가족친화 인증기업
인천시 청년인턴십 참여기업	희망이음 지역 중소·중견기업 참여기업
여성기업, 장애인기업	1석5조 청년프로젝트 참여기업
인천광역시 비전기업 또는 유망중소기업, 중견성장사다리기업 · 최근 3년 이내 수상인정. ·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항일 시 각각의 범위 인정 (※ 유효기간 내) · 각 해당사항의 수에 따른 가산점 산출 - 3개 이상 해당- 5점, 2개 이상 해당- 4점, 1개 이상 해당- 3점	기업 활동과 관련 시장 및 장관 이상 표창 수상 (중소기업대상, 기업인대상, 벤처기업대상, 품질경영대회 등)

○ 신청절차

1. 홈페이지 접속	- 홈페이지 : bizok.incheon.go.kr
2. 회원가입 및 기업정보 등록	- 파일 업로드 및 정보입력
3. 온라인 신청	- 서류 업로드 · 참여신청 및 계획서 · 견적서 및 관련 증빙서류 · 개인정보 활용 및 사업참여, 청렴이행 확약 등 동의서 · 사업자등록증 및 업종증빙서류 등 ·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· 국세·지방세 완납증명서 · 청년 고용창출 증빙서류 · 지자체 수상실적 및 인증기업 등 · 그 외 내용 별 요청서류
4. 서류보완/재신청	- 담당자 안내에 따른 보완서류 업로드. 3일 초과시 전체 재신청
5. 지원결정/통보	- 서류심사 → 현장평가 → 위원평가 후 결정사항 개별통보

○ 제출서류 목록

No	제출서류 목록
1	「2018년 청년고용우수기업 근로환경개선사업」 참여 신청 및 계획서 「서식1」 견적서 및 관련 증빙서류
2	① 시설 개보수 :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각 1부, 세부내역 (단기예산 산출내역 및 설계도면 등) ② 물품구입 :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각 1부, 카달로그 등 * 시설 개보수 및 물품구입 동시 지원할 시 위의 모든 사항을 충족
3	개인정보 활용 및 사업참여, 청렴이행 확약 등 동의서(기업체) 「서식2」 사업자등록증 및 업종증빙서류 등 ① 제조업 - 공장등록증명서 (공장 미등 시 건축물관리대장 사본 제출) ② 제조관련 서비스업 - 업종증빙서류
4	임대건물 및 공동발의 제출서류 (※ 필요시 추가서류제출) ① 임대 건물 - 임대건물 공장등록증명서 및 임대차 계약서 사본 제출 - 2018년 「청년고용우수기업 근로환경개선사업」 사업추진 동의서 「서식3」 ② 공동 입주 건물의 입주 기업 공동발의 - 2018년 「청년고용우수기업 근로환경개선사업」 공동발의 동의서 「서식4」
5	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(2017년 01월 02일 기준, 신청일 이전 1년 기준, 2018년 신청일 기준 각 1부 -신청일 7일 이내 발급분) 예시 : 신청일이 06월 05일인 경우 ① 2017년 01월 02일 기준 ② 2017년 06월05일 기준 ③ 2018년 06월 05일 기준 4대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각 1부
6	국세·지방세 완납증명서 청년 고용창출 증빙서류
7	① 근로계약서 ②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및 사실확인서(청년) 「서식5」 ③ 주민등록등본 (주민등록등본은 과거주소변동사항 포함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)
8	지자체 수상실적 및 인증기업 등 (증명서류 제출-가점사항) (최근 3년, 일자리 및 청년관련 수상 인정, 기타 인증기업 등)
9	그 외 신청 내용 별 접수기간 요청서류

○ 제출서류 상세내용

제출서류 상세내용	
1. 참여신청서	① 기업정보 및 지원자격 관련사항 확인.
2. 참여계획서	① 환경개선이 필요한 사유와 이에 따른 사업장 전반에 미치는 기대 효과 상세하게 기재 (필요시 칸 추가하여 작성. 페이지 수 제한 없음) ② 약식도면은 시설 개보수 및 물품 설치 장소를 알아보기 위함으로, 평면도와 비슷한 형태로 약도화하여 제출 (간단한 수기작성 가능) ③ 시설 개보수 의 경우 단가 계산 산출내역 및 설계도면 등 세부 내역이 명시된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각 1부 제출 ④ 물품구입 의 경우 물품 카달로그 및 사진이 포함된 견적서, 비교 견적서 각 1부 제출 ⑤ 시설 개보수 및 물품 구입을 동시 신청할 경우 모두를 제출 하여야 함. ⑥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할 경우, 관련 서류를 재요청 할 수 있음.
3. 개인정보 활용 및 사업참여, 청렴이행 협약 등 동의서(기업체)	①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에 관한 사항, 고유식별정보 수집 동의,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,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, 청년 이행 및 사업참여 협약, 제외기업 해당여부 ② 위 사항에 동의·협조·확약·확인하지 않을 시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
4. 사업자등록증 및 업종증빙서류 등	① 사업자 등록증-사업장 소재지 및 업종확인 ② 제조업 - 공장등록증명서 제출 ③ 공장미등록 기업 (공장건축면적이 500㎡ 미만 경우) ④ 건축물 관리대상 사본 제출(용도가 공장, 제조 등으로 표기 되어 있어야 함. ⑤ 기타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, 현장평시 기업의 주된 사업이 제조업을 영위하는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함 ④ 임대건물일 경우 -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사업추진동의서 제출 ⑤ 공동입주 건물일 경우 대표참여기업이 공동발의 진행 가능. - 공동발의 동의서 제출
5.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	① 신청일 기준 7일 이내의 4대보험 가입여부를 확인 - 2017년 1월 2일 기준(공통사항), 신청일 이전 1년 날짜 기준, 신청일 기준 각 1부 ② 근속 여부를 확인하여 지난 6개월간 동일기업에 재취업 이력이 있는 청년은 실적 산정에서 제외함. ③ 신청일 현재 재직중이어야 하며 재직일수는 무관함. ④ 사업선정 전 청년의 퇴사로 채용실적이 인정될 수 없는 경우 신규채용이 이루어질 때 까지 그 신청을 유보함.

6. 국세·지방세 완납 증명서	①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(www.hometax.go.kr)에서 발급 가능 ① 근로계약서 ②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및 사실확인서(청년) 「서식5」 ④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에 관한 사항, 고유식별정보 수집 동의,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, 주소지 및 근로계약서 확인사항 ⑤ 위 사항에 동의·협조·확약·확인하지 않을 시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③ 주민등록등본(주민등록등본은 과거주소변동사항 포함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)
7. 청년 고용창출 증빙 서류	①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(www.hometax.go.kr)에서 발급 가능 ① 근로계약서 ②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및 사실확인서(청년) 「서식5」 ④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에 관한 사항, 고유식별정보 수집 동의,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, 주소지 및 근로계약서 확인사항 ⑤ 위 사항에 동의·협조·확약·확인하지 않을 시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③ 주민등록등본(주민등록등본은 과거주소변동사항 포함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)
8. 지자체 수상실적 및 인증기업 등 (증명 서류제출-가점사항) - 참여기업 가점사항 확인	
9. 그 외 신청 내용 별 접수기간 요청서류	

○ 제외기업

-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
- 신청일 기준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
- 환경오염 부당노동행위, 불법행위, 민원야기 등 사회적 물의 기업
- 동종업체 대비 현저히 낮은 임금수준 등 심의위원 다수가 선정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기업
- 임금체불, 근로계약서 작성, 부당노동행위, 4대보험 등 기본 근로기준법 관련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기업
- 중앙부처 및 지자체 동일분야 및 유사한 지원을 받은지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기업
* 단, 지원받은 금액이 10백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경과된 기간과 상관없이 지원 가능
- 시설이 양호하여 개보수 공사가 불필요한 경우
- 임대·전대 공장의 경우 건물주·임대자의 확보가 어려운 경우
- 무허가 건물 등 건축법 상 허가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
- 기타, 운영기관에서 사업 참여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기업

○ 유의사항

- 지원기업으로 선정된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한 경우, 1년간 동 사업 및 관리 기관 기업지원 서비스사업 참여 제한 등의 제재를 취할 수 있음.
- 동일 사업으로 3년 이내 중복 지원을 받았을 경우 사업비 전액을 환수함. - 10백만원 이하 제외
- 지원받은 기업은 향후 3년간 동일 사업에 지원할 수 없음.
- 허위로 신청한 경우, 사업비 전액을 환수함.
- 신청기업 대표 및 임원과 직·간접적으로 연계되어있는 친인척 관계 (직계 존비속, 형제, 자매 등)에 해당하는 청년은 채용실적에서 제외
- 서류 제출은 총 2회로 사업신청, 지원금 신청
-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.
 - 원칙적으로,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대상 적격 및 지원금 지출여부 판단
 - 신청한 모든 사업자가 지원받는 사업이 아니며, 심사를 거쳐 선정된 기업에 한하여 지원
- 지원 선정 취소
 - 신청업체가 부도, 폐업, 신용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
 - 위법·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
 - ※ 지원금 전액 환수 및 향후 지원 사업 배제, 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 등에 통보
 - 지원결정 통보(일) 이전에 시행한 경우
 - 사전승인 없이 제작업체, 과제내용 등 주요사항을 변경할 경우
 - 지정기한 내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
 - 기타 판단에 의거 지원 철회 사유가 발생한 경우
- 결정된 지원사항의 변경 및 포기
 - 변경시 사업변경신청서 제출 ※ 담당자의 사전 승인 필요
 - 변경 시 비용이 상향되어도 선정시 결정된 지원금 이상으로 상향되지 않음. 단, 변경 이유가 타당하며 최대 지원금 미만으로 선정되었을 경우 사업예산 잔액에 따라 최대 지원금까지 변경 가능
 - 지원포기의 경우 지원사업포기신청서 제출
- 시공·제작업체 선정
 - 사업자 본인과 가족관계(직계존비속, 형제, 자매)에 해당하는 시공 및 물품구입 업체는 선정 불가
 - 전자 세금계산서 미대상은 수기 세금계산서와 기타 시공업체와 관련된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.
- 완료보고 및 증빙자료 제출
 - 제출서류가 미비할 시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, 필요시 현장점검 후 지원금 지급 할 수 있음
- 지원금 지급
 -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에 따라, 제작비용 지출 증빙은 전자 세금계산서와 입금확인 서류 (입금증 또는 입금통장 사본) 제출을 원칙으로 함
 - 지원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내 사업자 폐업 또는 전매시 향후 재지원 불가